



현장실습 운영규칙

규정번호	3-4-12
제정일자	1997.03.01
개정일자	2015.10.12
개정번호	Ver.12 총페이지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칙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실습교과”라 함은 교과목 이론 강의시간이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하인 교과목을 말하며, 이론 강의시간이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한 교과목은 이론교과로 본다.

② “현장실습”이라 함은 전공교과와 관련이 있는 산업체 등에서 실습 근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교내실습”이라 함은 교내에 산업체와 유사한 교육환경과 조건을 구비하여 실습수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현장실습”은 방학 중 현장실습, 취업연계 현장실습으로 구분하며,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근무시간을 실습시간으로 보며 수업일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방학 중 현장실습”이라 함은 방학 중에 학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소정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연계 현장실습”이라 함은 최종 학기 교육과정이 실습교과로 편성된 학과가 해당학기를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으로 병행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각 학과는 교내에서 수업할 수 없는 전공교과목이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계획된 각 학과는 소정기간의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은 학과 전공 및 교육과정과 연관된 실습기관(산업체)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4조(운영체계)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총괄하며, 학과장이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15.10.12.>

② 학과 현장실습 담당자는 학과장의 지휘로 현장실습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①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관 연계 협약 체결 산업체
2. 5인 이상 고용 산업체
3. 산업체 위탁과정으로 인가한 산업체
4. 기타 총장이 인정한 산업체

②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 준하여 학생이 임의로 산업체를 선택한 후 소속 학과장의 허가를 득하면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각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실습 산업체로 추천된 산업체의 장에게 현장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6조(현장실습 운영조건) ① 현장실습은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현장실습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에는 산업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체 관리자를 현장실습 지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방학 중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및 학생실습종합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실습으로 근무 중인 학생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단, 산업체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④ “취업연계 현장실습”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어야 하며,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 산업체 변경) ① 현장실습 산업체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이 중지되는 경우, 학과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산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변경은 승인할 수 없다.

제8조(현장실습 개설시기) ① 제2조 제3항의 “방학 중 현장실습”은 1학년 동계방학부터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제2조 제3항의 “취업연계 현장실습”은 학생의 최종학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과장은 시간외 및 공휴일에 현장실습이 실시된 경우, 그 일수를 현장실습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생의 배정 및 사전 교육) ① 학과장은 산업체별로 업체의 특성, 대상 학생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현장 실습생을 배정하고 실습생들에게 공지한다.

② 현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습 대상자의 경우는 재직 중인 산업체에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 현장실습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중 현장실습 인정 신청을 하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자는 현장 실습생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④ 학과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일정 및 사전교육 사항
2. 안전 및 예절교육
3. 학과별 현장실습 프로그램
4. 현장실습 평가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중지 사유
6.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현장실습 순회지도) ① 학과장은 현장실습기간 중에 순회 지도교수를 정하여 1회

이상 현장실습 학생의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실습생의 출결 상황
2. 실습 태도 및 이행능력
3. 현장실습일지 기록 상황 및 실습 진도
4. 실습생을 지도감독, 평가할 산업체 담당자의 지정 여부 및 지도 상태
5. 현장여건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 등

② 학과장은 순회지도 실시 전에 산업체별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은 현장실습 종료와 함께 산업체 방문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11조(현장실습일지 작성)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한다.

<개정 2015.7.1.>

제12조(현장실습 취득학점) ① “방학 중 현장실습”은 2주 이상의 현장실습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학 중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과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전공 3학점 이내로 하며, 현장실습 수행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 희망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취업연계 현장실습”에 대한 취득학점 및 성적은 해당학기에 수강 신청된 교과목 중에서 실습교과에 한하여 부여된다.

제13조(현장실습 결과물 제출) ① “방학 중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일지 등 결과물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별로 부여받은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 등 결과물을 해당 실습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 성적평가) ① 현장실습 성적 평가는 학칙에 의한다.

② “방학 중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종료 후 평가기간 내에 평가자료에 의거 담당교수가 현장실습 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하고, 평가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개정 2015.10.12.>

③ “방학 중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산업체 평가서 50%, 현장실습 순회지도 30%, 현장실습일지 및 기타 과제물 20%로 한다. 현장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할 경우 이수자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취업연계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출석 20%, 산업체 평가 30%,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 50%를 기준으로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하며, 해당 학생의 중간고사 결과가 있는 경우는 출석 20%, 중간고사 30%, 산업체 평가 20%,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 30%를 기준으로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현장실습 기간을 반영한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을 개별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 인정범위) 총장이 승인하는 현장실습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규정된 산업체로서 전공과 직무분야가 관련이 있는 산업체
2. 제4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산업체로서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임을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산업체 재직자로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임을 담당교수가 확인하고 인정하는 경우
4. 작품전 출품 제작에 참여중인 자이거나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중인 자 중에서 현장실습 인정 신청을 하고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현장실습협약 등)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는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5.7.1.>

제17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개정 2015.10.1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전면 개정으로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학년도 여름방학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현장실습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